

부 록

-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33面
-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35面
-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35面
- 농어업소득증대분야주요사업현지답사계획 /36面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군에서 처리한 민원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국민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꺾위된 경우 그 보꺾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4.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5. 기타 기관의장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민원재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서무계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의 주요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1.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 등 적부판단
2.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4. 주요정책사항 발굴 추진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0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1. 기관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제11조(참고인 진술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재심의위원회심의조서

(별지제1호서식)

(제9조제2항관련)

민원 유형		접수 일자		처리 기간		부터 까지
민원인성명		주소				
출원 요지						
재심의사유 (요지)						
심 의 의 결	심의일자 :					
	심 의 위 원	가	부	심 의 위 원	가	부